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16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0 년 8 월 7 일

## I. 재판 경과

1. 2020 년 1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 중인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8 호를 발령하였다.
2. 2020 년 2 월 27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서제출 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2 호를 발령하였다.
3. 2020 년 5 월 30 일, 피청구국은 서신을 통해 중재판정부가 절차 명령 제 8 호에 따른 청구인의 문서제출 불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피청구국의 신청**”). 피청구국은 신청에 (i) 부속서 1, 피청구국의 요청을 범주 A 에서 E 로 구분한 요약표; (ii) 부속서 2, 피청구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각 항목에 상응하는 요청의 카테고리가 주석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제출예외 정보목록의 요약 사본; (iii) 부속서 3, 청구인의 제출예외 정보목록 원본 전체; 및 (iv) 부속서 4, 청구인의 문서제출 불이행에 관한 피청구국과 청구인 사이의 교신내용 사본을 동봉하였다.
4. 2020 년 6 월 1 일, 청구인은 서신을 통해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불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청구인의 신청**”).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주장서면 제출 기한이 2020 년 6 월 19 일인 점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당사자들의 요청을 검토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한을 추후 적절한 시기에 정해질 때까지 연기하였다.
6. 2020 년 6 월 10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시간표를 승인하는 절차 명령 제 13 호를 발령하였다. 절차 명령 제 13 호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관한 추가 의견 제출 절차 및 기한 등을 포함하였다.
7. 2020 년 6 월 24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문서제출의무와 관련된 2020 년 6 월 1 일자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14 호를 발령하였다.
8. 2020 년 7 월 24 일, 청구인은 절차 명령 제 13 호에 따라 피청구국의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9. 2020 년 7 월 31 일, 피청구국은 갱신된 부속서 1, 2 및 4.1 을 동봉하여 청구인의 2020 년 7 월 24 일자 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10. 2020 년 8 월 6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2020 년 7 월 31 일자 서신에 관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 II. 피청구국의 신청

11. 피청구국은 2020 년 7 월 31 일자 서한에 개정된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이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 (i) 청구인은 본 신청에 갱신되어 첨부된 부속서 1 소정 범주 A, B, C-1, C-2 및 C-4 에 나열된 문서를 제출 할 것;
- (ii) 청구인은 본 신청에 첨부된 부속서 1 소정 범주 D 에 나열된 문서의 삭제편집을 제거할 것; 및
- (iii) 범주 E 에 나열된 문서를 제출할 것, 혹은 절차 명령 제 14 호에 비추어,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범주 E 문서가 피청구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중재판정부의 추론을 요청할 수 있다.

### III. 당사자들의 입장

#### 1. 피청구국의 입장

- 12.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상응 문서의 제출거부 및 삭제편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제출예외정보목록에 제출거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바 문서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최소한의 의례적 정보”에 근거하여서는 문서제출 거부가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항 제(c)항에 따라 정당인지 여부 및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삭제편집할 “상당한(compelling)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피청구국 및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3. 피청구국에 따르면,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보다 비밀유지를 우선시”하였고, 문서 1,502 건에 대하여 주장한 (i)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 (ii) 작업물 보호의 원칙(work product doctrine); 및 (iii) 상업적 민감성 또는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에 여하한 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 및 설명하지 않았다. 피청구국은, 투자조약 판정부 판결 및 미국 판례에 의존하여 문서제출거부 당사자인 청구인이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자신의 특권주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4. 피청구국은 또한 청구인이 제출되지 않은 상응 문서를 재주장서면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문서제출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 A. 범주 A

- 15.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발신인, 수신인 또는 참조수신인으로 변호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이 주장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메일 교신에 첨부된 문서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제출예외정보목록에서 “문서들은 연관 문서별로 모아 놓았습니다”라는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어떤 문서가 이메일 체인에 첨부된 문서인지 청구인이 설명하지 못 했다고 지적한다. 피청구국은 또한 법률자문이라 주장하는 주제에 관한 그 어떠한 세부내용도 제공하지 않은 채 문서가 “법률자문을 전달하고/하거나 법률자문에 관련”되었다고만 서술하는 것은 제출거부의 근거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16. 피청구국은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비특권문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만으로 해당 문서가 “특권의 보호”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판례들에 따르면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가 특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며, 청구인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혹은 법률 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이메일 첨부문서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범주 A 문서 중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거나, 법률 자문을 준비 혹은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명시하지 않았기에 피청구국은 해당 문서들이 실제로 특권문서가 아니며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또한, 피청구국은 변호사가 문서를 발신 또는 수신하지 아니하였으나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준비됨”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만으로 작업물 보호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비록 해당 문서가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되는 이메일의 첨부문서라고 간주하더라도, 변호사가 동 첨부문서의 수신인인지 여부 및 소송 또는 중재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지시 아래 준비되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 **B. 범주 B**

18.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비변호사인 제 3 자가 발신인, 수신인 또는 참조수신인으로 추가된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은 미국 판례의 의존하여 제 3자를 이메일 발신인 및 수신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서에 특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이메일 교신 및 첨부문서에 대한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 피청구국은 제 3 자와의 교신이 법률 자문에 대한 요청이나 제공의 일부로 구성될 경우 특권으로 보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축한다. 피청구국은 이메일 체인이 독자적인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나 법률 자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전 문서들이 “나중에 변호사에게 전달됨으로 인해 특권문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메일 체인에 포함된 제 3 자와의 교신내용이 변호사의 요청이나 법률 자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제 3 자와의 교신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되어야 하며 “나중에 교신된 특권 이메일은 간단하게 삭제편집할 수 있다”.
20. 피청구국은 특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제 3 자가 청구인 또는 변호사의 대리인이거나 제 3 자와의 교신 목적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얻기 위한 것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아이프리오와의 교신이 변호사의 요청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프리오가 추후에 제공한 정보가 “청구인이 외부의 대리인에게서 받았던 자문에 필수적”이었다고 해도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피청구국은 아이프리오가 청구인의 법인 구조에 “편입되는 (높은) 필요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아이프리오가 청구인의 “기능적 직원”이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마찬가지로, 뉴게이트 및 뉴스콤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결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기능적 직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21.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본인-대리인 관계를 명확히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문서와 동일한 설명을 가진 문서에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해당 문서를 제출 거부할 근거가 없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피청구국은 범주 B 의 여하한 문서에 대하여 “작업물 보호”가 주장되는 한, 청구인이 제공한 제한적인 정보에는 해당 문서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변호사에 의해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준비”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권 문서가 제 3 자에게 공개될 때 작업물 보호 특권은 유보된다고 주장한다.

### C. 범주 C

23.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적용되는 비밀유지계약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상업적 민감성/비밀성”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중재판정부가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청구인의 문서제출거부가 정당하였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의 “상당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국은 문서의 설명, 비밀이 주장되는 정보의 성격, 비밀유지계약의 범위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요청했으나 청구인은 해당 문서에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 3 자의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24.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해당 문서가 비밀정보를 “참조”한다는 근거로 문서를 보류하였다고 주장한다(범주 C-1). 범주 C-1 의 문서 일체가 “청구인의 아이프리오 선임에 관한 서신 또는 그 첨부파일”(범주 C-2)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아이프리오와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는 본 중재에서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의 문서 명령에 준수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요청된 가치평가 모델(범주 C-3)의 공개를 위해 청구인이 도이치 은행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한 청구인의 합의를 수용하지만, 도이치 은행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 본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도이치 은행의 승인에 관계없이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피청구국의 “이익은 본 중재의 목적에 따른 문서의 검토에 국한되며,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위 문서제출에 대한 조건을 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고 확인한다.

### D. 범주 D

2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문서 424 건의 삭제편집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정보 및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4 건의 문서에 대하여서만 삭제편집되지 않은 형태로 제출하도록 중재판정부가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이 “제 3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라는 근거로 삭제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삭제편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을 적시하거나 기타 관련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E. 범주 E**

26.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Redfern 일정의 문서제출 요청 제 7 번, 제 9 번 내지 제 11 번 및 제 14 번에 상응하는 추가문서를 제출하도록 중재판정부가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또는,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당사자가 중재과정부의 문서제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제한된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비추어,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범주 E 문서 제출거부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을 내려줄 것을 피청구국이 적절한 시기에 요청할 수 있는 유사한 명령”을 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7.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의 두 차례 문서제출 및 절차 명령 제 12 호에 따라 제출된 스프레드시트는 청구인이 “삼성물산 스왑의 인수, 처분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의 스왑거래 확인서”에 관한 요청 제 7 번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피청구국은 또한 청구인이 “2014 년 11 월부터 2018 년 7 월까지 삼성물산 및/또는 삼성물산 주식과 관하여 EALP 및/또는 기타 엘리엇 그룹 회사 간 여하한 스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아직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28. 요청 제 9 번 내지 제 11 번에 상응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특정 문서의 제출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국은 31 건의 일일 포지션 보고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2014 년 9 월부터 2015 년 7 월까지 9 개월 동안 각 거래일에 추가적인 일일 보고서가 존재했을 것이고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반대사실에 대한 확인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29. 마지막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2015 년 6 월 3 일까지 EALP 가 삼성물산 주식 11,125,927 주를 인수한 것에 관련한” 주식거래확인서, 일일 포지션 보고서 및 월별 내역서 등 요청 제 14 번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년 2 월 5 월 및 2015 년 9 월의 특정 일자에 삼성물산 거래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서를 제출한 바, 동종의 문서가 요청된 날짜에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2. 청구인의 입장**

30. 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서제출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가 피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제출예외 특권 또는 비밀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문서들을 보류하였고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c)항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문서보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분쟁의 쟁점을 좁히는 데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문서 제출에 관한 당사자들의 사전 교신 내역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은밀히” 행동하고 있다거나 문서제출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31. 청구인은 또한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던 여러 개의 상응 문서가 재주장서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피신청자의 주장을 일축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2020 년 3 월 6 일자 문서제출에서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청구국의 이러한 주장한 “명백하게 그릇된 것”이다.

**A. 범주 A**

32. 청구인은 범주 A 에 기재된 문서는 모두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에 첨부된 것으로 미국의 관례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문서는 각 단락 내에서 시간 순으로 정렬”하였고 “연관 문서와 함께 모아 놓”았다는 청구인의 특권 근거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은 그들의 특권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메일 본문과 첨부 파일을 “인위적이며 또한 부정확”하게 분리하였다.
33. 따라서, 청구인은 범주 A 소정 문서들이 정당하게 보유되었고 제출예외정보목록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B. 범주 B**

34. 청구인은 제 3 자가 관여된 문서들에 대한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동 문서의 대다수는 “[청구인의] 법률자문 요청 또는 제공의 일부”로서 청구인과 제 3 자 사이의 서신만을 포함하는 이메일 체인이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제 3 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법률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일환”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제 3 자가 참조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네 개의 이메일 체인을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제 3 자와의 교신내역은 첨부문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에 의해 보호되며 “제출예외 특권이 면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5.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과 변호사 간 의사연락에 관여한 제 3 자가 대부분의 경우 청구인 또는 변호사의 대리인으로 행위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청구국이 인정한대로 그들은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청구인에 따르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된 소송에서 필요한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회사가 사전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특별한 경력을 보유하는 홍보대행사 및 기타 컨설턴트는 미국 관례의 의해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본건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아이프리오를 청구인 팀에 “편입”하였다고 설명한다. 청구인은 “한국에 자체 홍보팀이 없었으므로” 합병으로 인해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뉴게이트 및 뉴스콤이 “필수적인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6. “본인-대리인 관계는 명확히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11 건의 문서들에 대해 청구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공개할 것을 확인한다.

**C. 범주 C**

37. 청구인은 아이프리오와의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에 의해 청구인이 아이프리오와 교환한 문서의 공개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범주 C-2). 청구인은 아이프리오 약정 전문을 인용하여 동 약정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형식 및 편집 상태와 무관한 모든 정보, 자료 문서, 데이터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업적 비밀”로 간주하지 않는 한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청구인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요청된 문서를 정당하게 보유하였고 제출예외정보목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38.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은 기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문서를 보류하였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일축한다 (범주 C-1). 청구인은 한 건을 제외한 모든 문서가 아이프리오 선임에 관한 서신이거나 그 첨부 파일이므로 아이프리오와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가 “정면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동 문서의 대다수가 범주 B 문서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에 근거하여 추가로 보류되었다고 주장한다.
39. 피청구국이 본 중재 목적으로만 해당 문서를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여 준 것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국에 도이치 은행으로부터 보내진 요청된 이메일 커버를 개별적으로 게시하고, 도이치 은행에 서신을 보내어 가치평가 모형의 사본을 적절한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 **D. 범주 D**

40. 청구인은 청구인과 4 대 회계법인 간의 비밀유지 의무 및 아이프리오 약정에 포함된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피청구국이 요청한 문서 다섯 건 중 네 건을 적절하게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문서에 대해, “본 중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국 이외의 투자에만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한하여 편집”하였고, 피청구국 역시 청구인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

#### **E. 범주 E**

41. 청구인은 문서요청 제 7 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두 문서에서 확인된 거래 및 2015 년 9 월에 체결된 일부 거래 외에 2014 년 11 월부터 2018 년 7 월까지 “삼성물산 주식과 관련하여 EALP 또는 그 밖의 엘리트 그룹사 간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청구인의 자체 검색에서 2015년 9월경 스와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기관의 이름, 거래일, 스와프 취득 금액, 처분 시 수령 금액”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확인한다.
42. 청구인은 또한 2015 년 4 월과 5 월 사이에 체결된 34 건의 삼성물산 스와프 거래 중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10 건에 대한 거래 확인서를 피청구국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직접 보유하였던 사실을 원용하면서도, 요청된 날짜의 스와프 거래를 증명하는 나머지 거래 확인서를 “성심성의껏 검색”하여 본 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피청구국에게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
43. 청구인은 “일일 포지션 보고서”를 포함하여 2014 년 9 월 및 2015 년 7 월 17 일 사이에 거래한 주식에 관련된 요청 제 9 번 내지 제 11 호에 상응하는 문서를 청구인이 보류했다는 피청구국의 제안을 거부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특정일 기준 청구인의 삼성물산 포지션을 확인하는 “문서는 100 건 넘게 게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주식 모니터링 요약”) “일일 보고서 9 개월치 분량”이 존재한다고 추측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상응하는 일일 포지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요청 제 9 번 내지 제 11 호에 대하여는 추가 명령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44. 청구인은 주식거래확인서 등 요청 제 14 번에 상응하는 문서를 의도적으로 제출 거부하였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거부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요청 제 14 번에 상응하는 문서들은 피청구국의 문서요청 제 9 번 내지 제 11 번에 상응하는 문서들의 “하위 집합”이며, 청구인이 해당 문서들을 금융감독원에 공개함에 따라 피청구국이 보유하고 있다. 주식거래확인서가 재주장서면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추가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간주한다.
4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범주 E 에 따른 요청이 “피청구국이 문서개시요청의 기존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은 중재판정부의 기존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공개하라고 명령이 없었던 문서들을 개시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없”다.

#### IV. 중재판정부의 분석

46. 피청구국의 문서제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절차 명령 제 8 호와 부속서 II 에 첨부된 피청구국의 Redfern 일정에 명시되어있다.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요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을 결정했다:

28. [...]

청구인은 제출예외의 특권 또는 법적 방해의 근거로 제출이 제한되는 해당 문서를 각각 확인하는 특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특권 목록은 피청구국 및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 또는 기관에 예민한 사항 또는 제출예외의 특권 정보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7. 중재판정부는 또한 청구인의 신청을 다룬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절차 명령 제 1 호 중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문서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상기한다. 따라서, 절차명령 제 1 호 제 5.3.7 항 및 IBA 규칙 제 9 조 제 5 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문서제출 요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절차 명령 제 1 항 제 5.3.6 항에 따라 참조할 경우), 상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문서제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해당 당사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추론을 도출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sup>1</sup>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14 호 제 52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8 호에 따른 상대 당사자의 문서제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제기한 광범위한 주장에 비추어,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청구인의 문서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sup>1</sup> 절차 명령 제 14 호, 제 51 항.

A. 범주 A

49. 상기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피청구국은 부속서 1 에 나열된 문서 중 청구인의 제출예외정보목록에 기재된 문서와 관련하여 범주 A 소정 “발신인, 수신인 또는 참고수신인으로 변호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이 주장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이메일 체인에 첨부된 독자적 문서나 제 3 자가 작성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 및 작업물 보호에 의하여 보호 되지 않는다. 피청구국은 *AM Gen. Holdings LLC v. Renco Grp, Inc.* 판결을 인용하며 오히려 “이메일은 특권이 있으나, 이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특권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첨부된 이메일로부터 파생하는 특권을 근거로 첨부 파일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올바른 규칙이라고 설명한다.<sup>2</sup>
50.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의 모든 경우에 범주 A 문서 107 건은 의뢰인 및 대리인 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문서는 각 단락 내에서 시간 순으로 정렬하였으며, 연관 문서와 함께 모아 놓았습니다”라는 도입부 두 문단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는 청구인의 제출예외정보목록 그 자체로 자명하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인위적이며 또한 부정확하게” 이메일 본문과 분리된 대리인 및 의뢰인 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51. 중재판정부는 범주 A 에 나열된 문서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은 법적 기준의 내용보다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제공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교환된 첨부 문서는 적용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제출예외 특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 것은 (i) 변호인과 의뢰인 간 교신내역에 첨부된 비특권문서는 첨부 사실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히 첨부된 문서와 요청되거나 제공 중인 법률 자문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ii) 첨부문서는 첨부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교신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지정될 수 없다. 상기 47 항의 결정에 비추어, 범주 A 문서 각 107 건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법적 기준에 따라 문서제출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필요성이 존재하거나 실제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상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범주 A 에 기재된 각 문서의 제출거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sup>2</sup> *AM Gen. Holdings LLC v. Renco Grp., Inc.*, 사건 번호 7639-VCN, 판결문 속보, 제 10 면.

<sup>3</sup> 피청구국은 국제중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의 내용에 관해서 통일된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특히 청구인이 미국 기반의 회사이고, 변호사의 전문 거주지법, 본 사건에서는 미국(워싱턴 D.C.), 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함에 있어서 주장하는 특권에 대하여 미국 특정 관할권의 법률이 추가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피청구국은 IBA 규칙 제 9.2 조 제(b)항을 참조하는데, 이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판정부의 자체 결정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한 법적, 윤리적 규칙에 따라” 문서제출 의무에서 해당 문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In re Abilify (Aripiprazole Prod. Liab. Litig.)* 사건(2017 WL 6757558), 2017. 12.19 자 플로리다 북부 연방지방법원 결정, 제 7 면; *Durling v. Papa John’s Int’l, Inc.* 사건(2018 WL 557915), 2018. 1. 24 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결, 제 8 면 등을 포함한 미국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해당 법률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청구인에게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B. 범주 B

52. 피청구국은 범주 B 에 나열된 변호사 이외에 발신인, 수신인 또는 참고수신인 중 비변호사인 제 3 자가 추가된 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은 법적 근거 및/또는 입증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문서 보류를 정당화하고자 제공한 청구인의 설명과 근거를 거부한다.
5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주 B 가 두 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 첫째는 의뢰인 및 제 3 자 간 의사연락으로 시작되어 “제 3 자로부터 정보를 공유 또는 전달받는 것을 언급”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연락으로 마무리되는 일련의 이메일 체인이고; 변호사 및 의뢰인 간 의사연락에 제 3 자가 관여하는 것이 두 번째 경우이다. 청구인에 따르면, 첫번째 경우에서 다루는 교신내역은 범주 A 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두 번째 경우와 관련된 교신 또한 제 3 자가 “법률자문을 얻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혹은 의뢰인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청구인에 따르면, 이는 제 3 자가 관련된 피청구국이 요청한 모든 문서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 문서에 대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으며, “본인-대리인 관계는 명확히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11 건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청구인은 해당 문서를 피청구국에게 별도로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54.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는 상기 53 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 즉 의뢰인과 제 3 자 간 의사연락으로 시작되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연락으로 마무리 되는 이메일 체인은 범주 A 소정 문서와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동 문서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전달된 문서인 점에서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문서, 즉 제 3 자가 관여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 교신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제 3 자가 청구인 혹은 변호사의 대리인이거나 기능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그리고 의사연락이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해당 법적 기준에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한다.<sup>4</sup>
55. 상기 51 항에 명시된 이유로, 청구인은 범주 B 문서의 제출거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기 54 항에서 언급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것을 지시한다.

### C. 범주 C

56. 피청구국은 범주 C 에 나열된 “상당한 필요성”은 고사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상업적 민감성/비밀성”을 이유로 보류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동

<sup>4</sup> 당사자들은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 법적 기준이 적용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청구국의 신청, 제 48(a)항, 2020년 7월 31일자 피청구국의 서신, 제 5-9면 및 2020년 7월 24일자 청구인의 서신, 제 5면 참조. 그리고 그 안에 인용된 판례 및 기타 법적 권한 참조.

문서는 불특정의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제출 거부된 문서 (범주 C-1);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아이프리오와의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제출 거부된 문서 (범주 C-2);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스펙트럼 아시아와의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제출 거부된 문서 (범주 C-3); 및 도이치 은행이 제공한 가치평가 모형 및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데에 쓰인 이메일 커버 등을 포함하여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도이치 은행과의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을 근거로 제출 거부된 문서 (범주 C-4)가 포함된다.

57.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요청한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범주 C-3(스펙트럼 아시아와의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제출거부된 문서)에 따른 요청을 철회하였다. 청구인은 이어 범주 C-4 에 속하는 문서 중 한 건(도이치 은행이 제공한 가치평가 모형을 전달하는 데에 쓰인 이메일 커버)을 제출하였고 도이치 은행에 서신을 서신을 보내어 가치평가 모형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이치 은행의 동의를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도이치 은행과의 교신내용과 함께 가치평가 모형을 청구인이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58. 청구인은 범주 C 에 나열된 나머지 모든 문서는 제 3 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에 의해 보호되므로 IBA 규칙 제 9.2 조 (e)항에 따라 문서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범주 C-1 의 (제출예외정보목록 제 732-972 항에 기재된) 일부 문서에도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이 적용된다.
59.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IBA 규칙 제 9.2 조 제(e)항(“중재판정부가 보호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이 관련”)이 범주 C 에 속하는 문서의 제출여부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는 것을 논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의 이견은 오히려 동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문서 제출거부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성만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피청구국은 또한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c)항에 따라 제출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청구인이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60. 중재판정부는 범주 C-3 에 나열된 문서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이 철회되고 범주 C-4 에 나열된 청구인의 이메일 커버 제출 및 가치평가 모형 사본 제출을 위해 도이치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겠다는 청구인의 확인 후, 범주 C 문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남은 주요 쟁점은 아이프리오와 약정한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 거부한 문서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아이프리오와 약정한 비밀유지 조항의 엄격한 언어에 비추어, 동 조항에 따라 수행하는 청구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문서제출거부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청구인이 아이프리오와 약정한 관련 비밀유지 조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문서제출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절차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61. 당사자들 간의 나머지 이견은 도이치 은행이 개발한 가치평가모형(범주 C-4)의 제출요청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도이치 은행의 모형 사본 공개 동의를 요청하였다고 한 것을 확인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에게 그러한 요청현황과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도이치 은행의 반응을 알리도록 지시한다.

**D. 범주 D**

62. 피청구국은 범주 D 에 나열된 문서 중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c)항에 따라 청구인이 삭제편집한 근거의 정당성을 피청구국 또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IBA 규칙 제 9.2 조 제(c)항에 따라 상응 문서를 삭제편집하기 위한 상당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5 건의 삭제편집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러한 근거가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문서에 어떤 카테고리의 근거가 적용되었는지 특정조차도 하지 않았”다.
63. 이후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삭제편집하였다고 명확히 했다는 근거로 문서 중 하나에 대한 요청(ELPROD 0002903)을 철회하면서 문서제출 요청을 네 개로 축소하였다.
64. 청구인은 문서 다섯 건의 삭제편집이 적절하며, 각 삭제편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65. 청구인의 문서제출 의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보인 다른 이견과 마찬가지로, 본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견해차이는 법적 기준 자체보다는 관련 법적 기준의 적용과 더 관련이 있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적용되는 기준에 “중재판정부가 보호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업적 또는 기술적 비밀이 관련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해당 문서를 제출의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IBA 규칙 제 9.2 조 제(e)항 및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c)항이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
66.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4 건의 요청 중 3 건이 아이프리오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상기 60 항의 결정에 비추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이러한 문서의 삭제편집을 정당화하고자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sup>5</sup>
67. 나머지 문서인 ELPROD 0000527 에 대해 청구인은 제일모직 가치평가를 수행한 “4 대 회계법인”의 이름을 “기밀유지 의무에 따라” 편집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i) 의존하고자 하는 비밀유지약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혹은 (ii) 그러한 약정이 가치평가를 수행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추가 명령 없이 평가를 수행한 당사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되 청구인에게 관련 비밀유지 약정 내용을 피청구국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한다.

<sup>5</sup> 절차 명령 제 8 호 제 28 조 제(c)항에 따르면, 청구인의 제출예외정보목록에는 “피청구국 및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 또는 기관에 예민한 사항 또는 제출예외의 특권 정보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 범주 E**

68.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본 범주에 속한 피청구국의 Redfern 일정 가운데 문서제출 요청 제 7 번, 제 9 번 내지 제 11 번 및 제 14 번에 상응하는 문서에 한하여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요청된 문서에는 (i) 특정 기간동안 삼성물산 스왑의 인수, 처분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의 스왑거래 확인서에 관련된 문서; (ii) 2014 년 9 월부터 2015 년 7 월 17 일까지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과 외부 브로커와의 사이에 삼성물산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을 인수, 처분 또는 보유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주식거래확인서; (iii) 2014 년 9 월부터 2015 년 7 월 17 일까지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 사이의 주식 및 스왑의 내부적 배분에 관한 문서; (iv) 2015 년 6 월 3 일까지 모든 날짜에 대하여, 씨티 및 बैं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외부 브로커가 작성한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의 삼성물산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의 인수, 처분 또는 보유의 증거가 되는 주식거래확인서; (v) 2015 년 6 월 3 일까지 모든 날짜에 대하여, 씨티 및 बैं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외부 브로커가 작성한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의 삼성물산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의 인수, 처분 또는 보유의 증거가 되는 일일 포지션 보고서; 및 (vi) 2015 년 6 월 3 일까지 모든 날짜에 대하여, 씨티 및 बैं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외부 브로커가 작성한 EALP 및/또는 엘리엇 그룹의 삼성물산 주식 또는 기타 지분의 인수, 처분 또는 보유의 증거가 되는 월별 내역서를 포함한다.
69. 피청구국은 상기 47 항에서 언급된 절차 명령 제 14 호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범주 E 에 해당하는 대응 문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명령이 발령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불리한 추론을 요청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년 7 월 31 일자 서신에서 피청구국은 문서제출의무 이행에 대한 명령 요청을 대안의 신청 취지로 유지하였다.
70. 청구인은 상응 문서가 이미 제출되었고 성심성의껏 검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상응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범주 E 에 기재된 문서와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한 본 중재에서 해당 상응 문서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상응 문서를 개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증인 진술서, 증거물 및 기타 증거를 재주장서면 증거로 추가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청구인에 따르면,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요청 제 14 번에 상응하는 문서는 “요청사항 9-11 번에 상응하는 문서들의 하위 집합”이다.
71. 상기 47 항의 결정에 비추어,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신청에서 범주 E 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라는 피청구국의 주된 요청을 기각한다. 대안적으로 피청구국이 요청한 대로, 중재판정부는 본 절차 명령의 결정이 청구인이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특정 문서의 제출 불이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때에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피청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V. 중재판정부의 결정**

72.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신청 범주 A 에 기재된 각 문서의 제출 보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 절차 명령 제 51 항에서 규정한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한다;
- (b)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신청 범주 B 에 기재된 문서의 제출 보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 절차 명령 제 54 항에서 규정된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한다;
- (c) 피청구국의 신청 범주 C 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라는 피청구국의 신청은 기각한다;
- (d) 청구인은 (i) 범주 C-4 에서 언급된 가치평가 모형 제출에 대한 도이치 은행의 동의여부를 묻는 청구인의 요청 현황 및 (ii) 도이치 은행의 답변을 피청구국에 통지한다;
- (e) 청구인은 범주D에 기재된 2020년 3월 6일자 청구인 문서제출색인에 포함된 문서 ELPROD 0000527 을 작성한 당사자의 이름을 편집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의존한 비밀유지 의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f)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신청 범주E에 기재된 문서를 삭제편집되지 않은 형태로 제출하라는 청구국의 요청은 기각한다;
- (g)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신청 범주 E 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라는 피신청인의 요청은 기각한다; 및
- (h) 본 절차 명령에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청구인이 소유, 보관 또는 통제 중인 특정 문서 또는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고, 청구인의 불이행으로부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추론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피신청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